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6. 5. .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공업단지 조성사업 세입,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사업비를 독립회계인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것임.

주요골자

- 세입내역 : 보조금, 기채, 선수금, 기타수입금 등
- 세출내역 : - 토지매입비
- 지장물 보상비
- 이주대책비
- 조성사업의 공사비
-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
- 조성에 직접소요되는 기채이자, 정산금, 이주대책소요사업비
- 기타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
- 전입 : 독립채산 원칙
- 세출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 전입
- 준용규정 : 조례 이외의 내용은 일반회계 준용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(이하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2조 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 매각대(선수금을 포함한다),국비보조금, 지방비보조금, 기채,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3조 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, 지장물보상비, 공업용지조성공사비, 부대시설비, 공업용지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, 기채이자, 정산금, 이주대책 소요사업비, 기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 (전입)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.

제5조 (준용) 이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